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납자 실태확인 근거 마련〉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75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체납자 실태확인 근거 마련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14

I. 개요

1. 전진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75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11.

(3) 회 부 일 : 2026. 2.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 발생원인(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폐업상태인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 합리적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5조의5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체납자 실태확인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연체금, 체납처분비(이하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를 내지 아니한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95조의5 신설),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1조).

현행	개정안
<신설>	<u>제95조의5(실태확인)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내지 아니한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u> <u>1.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u> <u>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u> <u>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u>

현행	개정안
제131조(과태료) <신설>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건강보험공단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실태확인원의 교육·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과태료) ① 제9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한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장기 체납은 결국 노령연금액 감소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체납을 시정하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등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제95조 제4항),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제97조의2제1항)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금보험료등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데,¹⁾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31,726개소와 578,966명이고, 전체 체납액은 약 2조 5,400억원 규모로 나타남.

1)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97조의2(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항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사업장가입자에 한한다)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연금보험료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개월 이상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체납 현황 >

구 분	사업장가입자(사용자)	지역가입자
체납자(개소·명)	31,726	578,966
체납액(백만원)	509,787	2,030,707
최고체납액(백만원)	1,749	80
최장체납기간(개월)	225	306

주: 2025년 12월 현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또한,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를 매달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제90조제1항),

사용자가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28조제3항제2호),²⁾

개정안은 실태확인을 통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을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12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 첫째, 2025년 12월 법률 제21213호로 개정·공포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납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체납자의 납부의사나 납부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실태확인제도’가 새로 마련되었는데,³⁾

2026년 7월 현재 「국세징수법」에 따른 실태확인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그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법」에 실태확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실태확인 도입 시 실태확인원 신규 채용과 조직·인사 운영 등에 비용이 소요되고, 그 재원은 현행법 제102조의2제1항4)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3)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민연금법」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규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확인을 통하여 체납된 연금보험료등의 징수율을 높이는 것과 실태확인제도의 운영에 드는 각종 비용의 지출이 국민연금기금의 장·단기 재정 안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국세징수법」 제1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징수 분야에 도입된 실태확인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설치된 ‘국세체납관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편성된 2026년 예산은 약 100억 5,400만원으로, 2026년 7월 현재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채용하였음.

<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방문·전화실태확인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합계	전화실태확인원	방문실태확인원
직 무	-	○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전화상담 및 실태확인 업무보조	○ 체납자 실태확인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 등 방문상담
인 원	500	125	375
서울지방국세청	92	23	69
충북지방국세청	100	25	75
원주세무서	16	4	12
부산지방국세청	80	20	60
인천지방국세청	84	21	63
대전지방국세청	48	12	36
광주지방국세청	40	10	30
대구지방국세청	40	10	30

자료: 국세청

□ 셋째,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의 원칙과 그 절차·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95조의5를 신설하면서 도입하려는 ‘실태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⁵⁾에 해당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행위로서의 실태확인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로 야기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증표 제시’나 ‘조사의 사전통지’ 등 「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된 사항⁶⁾을 바탕으로 실태조사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넷째,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가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위 등이 적절한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안 제95조의5제3항),

5)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6)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31조제1항).

- 참고로, 이미 실태확인제도가 도입된 「국세징수법」에서는 실태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공단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그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⁸⁾

안 제95조의5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채용되는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7)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실태확인)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8)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안 제1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되는 중복의 문제가 제기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⁹⁾

국민연금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누구든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맞추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¹⁰⁾

9) 「국민연금법」

제124조(비밀 유지)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0) 「국민연금법」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8조(벌칙) ② 제1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과 관련 입법례, 실태확인원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가 체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위 등을 적정 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섯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괄 징수하는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체계’가 2011년 도입되어 계속 운영되고 있으므로,¹¹⁾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에 실태확인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건강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도 실태확인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과 관련하여 실태조사원을 채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53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여섯째, 연금보험료등 외에 현행법 제57조에 따른 환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이하 “환수금등”)의 미납에 대하여도 실태확인제도를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11)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법에서는 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를 국민연금공단이 환수하도록 하면서,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57조),¹²⁾

환수금등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57조의2),¹³⁾

개정안에 따라 ‘실태확인’이 도입되어 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등의 체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환수금등의 경우에도

12) 「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4. 제82조제3항에 따른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같은 항 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연금보험료”는 “환수금”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환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등에 충당할 수 있다.

13) 「국민연금법」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57조에 따라 환수금등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등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그 도달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95조제6항·제7항을 준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국민연금공단이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환수 실적을 제고할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의 환수금 결정액은 총 1,254억 3,800만원으로, 2025년 12월 말 기준 1,118억 1,300만원이 환수(환수율 약 89.1%)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환수 사유가 발생한 환수금에 대하여 1년 이상이 지나도록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전체 미환수액(136억 2,600만원)의 약 45%에 해당하는 61억 2,800만원임(자료: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환수금 발생·징수 현황: 2019 ~ 2025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환수 결정		환수		미 환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34,119	125,438	129,331	111,813	4,788	13,626
2025년	23,998	27,671	20,954	20,172	3,044	7,498
2024년	22,588	24,436	21,748	21,110	840	3,326
2023년	19,040	18,496	18,685	17,435	355	1,061
2022년	20,504	17,416	20,296	16,683	208	733
2021년	16,798	14,372	16,604	13,769	194	604
2020년	16,392	11,325	16,291	10,994	101	331
2019년	14,799	11,723	14,753	11,649	46	74

주: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각 항목의 값은 반올림되어 합계와 불일치할 수 있음.
자료: 국민연금공단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연금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하여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다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 인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 중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등 나머지 사회보험의 근거 법률 역시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6